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3
------	----

2022. 9.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29일, 아이수루 의원(찬성자 44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아이수루 의원)

### 1. 제안이유

- 현재 관광취약계층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 중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무장애 관광’ 정책을 시행 중임.
- 따라서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무장애 관광’을 환경적, 정보적,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무장애 관광과 관광약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무장애 관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나. 관광약자와 무장애관광의 정의(안 제2조)

- 최근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 관광 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을 위한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p>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p>

- 개정안은 관광취약계층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1)을 준용하여 소득 수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으

1)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로 정의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2인기준 27~34만원×1,455개팀)하는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사업이 운영 중임.
- 또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물리적인 이동에 한시적·영구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지 접근·이동 및 관광상품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무장애 관광’ 사업이 운영 중임.
- 2018년에 “서울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서울다누림관광센터(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시민관광 복지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개정안은 또한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관광약자’로 정의하고, 관광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 관광’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
-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활동비 지원 등 경제적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정책보다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무장애관광과 같은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환경이나 여건 개선 등이 보다 포괄적·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 무장애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는 것은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임.
- 현재 각 시·도마다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구분이 명확

하지 않고 정책용어도 상이함.

- 한편 경기도의 경우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의 개념을 사용하며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2019.2.)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관광취약계층에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

#### 다. 무장애 관광 지원(안 제5조의2)

- 개정안은 시장이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이동 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는 무장애 관광조성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됨.
- 장애인구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관광(무장애 관광)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견고히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 의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3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아이수루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영옥,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 석,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종국, 정준호,  
정진술,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황유정 의원(44명)

## 1. 제안이유

- 현재 관광취약계층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 중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무장애 관광’ 정책을 시행 중임.
- 따라서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무장애 관광’을 환경적, 정보적,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무장애 관광과 관광약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무장애 관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li> <li>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li> <li>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li> </ol> <p>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